

VI. 지급 방식의 다양화 방안

1. 다양화 필요성

퇴직연금 제도에서 일시금 중심으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DC형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급 방식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국가마다 문화, 사회보장 제도 및 과세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적절한 방식에 대한 합의를 찾기도 어렵다. 이는 퇴직연금 급여의 지급 방식이 정부의 적절한 역할, 개인의 선택 범위 등과 관련된 정치철학의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연금 방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퇴직 자산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공적 연금이 제공해야 하는 급부를 대체하기 때문에 일시금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공적 연금의 지급형태가 일시금보다는 규칙적인 소득 흐름을 갖는 연금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에서도 지급 방식을 연금으로 유도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제약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 무임 승차(free riding)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급 방식에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근시안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과도한 소비를 조장할 수 있어서 결국 사회보장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퇴직자의 대다수가 자가 연금 전략을 위해 필요한 전문 지식이 없으며, 필요한 금융 상품이나 자문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재무 행태 리스크 관련 실증 분석 결과를 신뢰한다. 따라서, 국가 입장에서 보면 모든 선택의 범주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Lunnon(2002)은 퇴직연금 자산의 바람직한 지급 방식에 대한 정책적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퇴직 후 가입자 소득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의 관점이다. 이는 퇴직연금 제도 본래의 취지가 근로기간 중 형성한 자산을 활용하여 노후소득을 대체하는 데 있기 때문에 고령계층의 빈곤을 방지할 수 있는 지급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제혜택 하에서 축적된 자산이 실질적으로 퇴직 소득으로 전환되는가의 관점이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세제 혜택은 EET라고 불리는데, 첫 번째 E는 기여금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을 의미하며, 두 번째 E는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이연을 의미한다. 마지막 T는 연금 수령 시점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퇴직 이후에는 소득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상속 자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질적인 노후 소득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셋째, 효율적 자산배분에 대한 통제력이 어느 정도 저해되는가의 관점이다. 자율적인 자산배분이 저해될 경우 최적 자산배분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넷째, 퇴직연금 가입자 및 사업자 측면에서 관리 및 운영의 용이성 측면이다. 특히 연금 공급자 입장에서는 리스크와 역선택 문제 등이 포함된다.

퇴직연금 제도의 지급 방식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Lunnnon(2002)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지급 방식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이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지 3년 정도에 불과하여 아직 까지도 선진 퇴직연금 제도의 모습을 갖추기에는 제도적 미비점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지급 방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본격적인 수급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고,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일시금 지급 방식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제일 수준이다³⁵⁾.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79.1세로 OECD 국가 평균수명 78.9세를 앞서고 있다. 200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은 76.4세로 OECD 국가 평균인 77.9세보다 낮았으나, 2006년에 처음으로 OECD 평균수명을 넘어선 것이다. 우리나라 남자는 OECD 30개국 평균(75.8세)보다 0.1년 낮고, 여자는 평균(81.4세)보다 1.0년 높다. OECD 회원국 중 최장수국인 일본의 평균수명 82.4

35) 1970년 이후 기대수명 변화를 보면 OECD 30개국 중 터키를 제외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세와의 격차도 크게 줄었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V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일시금 방식에 내재한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정부도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한 다각도의 모색이 필요하며, 일시금 중심의 지급 방식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퇴직 자산 축적을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제 혜택을 부여받은 자산의 지급 방식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국가의 경우 퇴직연금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중상위 소득 계층에 속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의 퇴직 소득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기여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합리적 의사 결정뿐만 아니라 인출 속도 및 지급 형태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시금과 연금 중 가입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험회사를 제외한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일시금 방식만 제시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보고되고 있는 재무 행태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대다수가 일시금을 선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사람들은 일시금에 대해 과도한 가치(over value)를 부여하기 때문에 일시금이 최적일지라도 일시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퇴직 자산으로 축적된 목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소유할 경우 부유함을 느끼는 “일시금 환상(lump-sum illusion)”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장래 자신의 기대여명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을 경우 일시금 환상은 더 커질 수 있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수명이 75.74세이기 때문에 55세 퇴직자는 향후 20.74년(=75.74세-55세)을 더 생존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평균수명은 출생 시점인 0세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2006년 현재 55세까지 생존한 남자가 앞으로 더 살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여명은 24.0년, 여자는 29.2년이다. 다시 말하면, 특정 연령까지 생존한 사람이 앞으로 더 살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별 기대여명과 출생 시 기대여명인 기대수명과는 다르다. 55세 남자가 75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67.3%,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49.4%에 달하며, 85세까지 생존 확률도 29.4%나 된다. 이런 수치는 2006년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생존 확률이 더 높아졌을 것이며

앞으로도 더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일시금 환상 현상을 감소시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시금 이외의 다양한 지급 옵션을 제시하고, 프로그램 인출이나 연금과 같은 소득 흐름 방식에 대한 장려가 필요하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정부 정책의 최고 목표는 고령기에도 빈곤에 처할 리스크를 축소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한 핵심 도구는 연금이나 프로그램 인출과 같은 소득 흐름 방식을 장려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 제도는 평균 소득대체율이 30% 수준³⁶⁾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 재정 불안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인출이나 연금 방식과 같은 지급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기존 사업체의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중 선택이 가능하므로 퇴직연금 제도의 지급 방식에 대해 강한 제한을 부과할 경우에는 일시금 선호 현상으로 인해 잠재적 가입자들의 참여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소득 흐름 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지급 옵션을 다양화하고, 일시금 지급과 소득 흐름 방식을 적절히 결합해서 소득 원천을 다각화하는 방식으로 자산 부족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정 방식에 대해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도구는 과세 제도가 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특정 방식의 선택을 장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지급 방식에 비해 개인들이 특정 방식을 선호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 유인을 주고 다른 방식은 불이익을 받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가 연금이나 프로그램 인출의 선택을 유도하고자 한다면 일시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이다.

36) 민세진(2007)의 연구에 의하면, 2007년 4월 기준 우리나라 평균 근로자의 월 급여액은 212만원이며, 동 근로자가 30년간 국민 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월 64만원을 수령할 예정이므로 공적 연금의 예상 소득대체율은 30% 정도이다. 우리나라 국민 연금 제도의 소득 대체율은 본격적인 연금수급단계에 진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큰 폭으로 감소해왔다(1988년~1998년 : 70% → 1999년~2007년 : 60% → 2008년~2027년 : 50% (매년 0.5%p씩 감소) → 2028년 이후 : 40%).

2. 다양화 방안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에서 지급 방식을 다양화해서 자산 부족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1안: 프로그램 인출 방식의 도입 및 장려

프로그램 인출은 일시금이나 종신 연금 형태가 아니라 세계혜택이 부여된 퇴직계좌를 계속 유지하면서 소득을 수령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하면, 일시금과 종신 연금 간 타협의 산물로서 연금에 비해 장수 리스크 헤지 기능은 약하지만,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인출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시금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일정 연령(예: 55~60세) 사이에는 퇴직 계좌의 투자 수익을 소득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정 연령 이후에는 원본과 투자 수익을 소득 원천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급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 연령, 수익률 또는 연령 및 수익률 모두를 고려해서 소득 인출
- 재량적 관리 하의 소득인출
- 통제 없는 소득 인출

칠레에서의 프로그램 인출 제도는 기대여명의 함수로써 매년 재계산된다. 호주에서는 인출 금액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유연성이 높은 유형뿐 아니라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고 잔여 생존자의 기대여명까지 반영하는 유형도 존재한다. 인출 상한을 설정하고 배우자의 기대여명까지 감안해서 설계할 경우 자산 부족리스크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프로그램 인출은 설계하는 형태에 따라 종신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생존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영국, 미국, 호주, 칠레 등 많은 국가에서 이런 방식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DC형 제도에서 일시금 방식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지급유형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인출 방식에 통제를 가하지 않는 프로그램 인출은 일시금 방식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퇴직 자산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연령이나 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2안: 일시금의 부분 제한 및 혼합 방식 유도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퇴직 자산 전체를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허용할 경우 퇴직 후 안전한 소득 확보라는 정책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일시금 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 필요하다. 일시금에 대한 부분 제한, 최저 수준의 연금화 정책 및 프로그램 인출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다양한 지급 방식의 조합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1) 2-1안: 최저 연금 의무화 + 일시금(또는 프로그램 인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연금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퇴직 자산 전부를 현금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고, 최저 연금 비율(minimum required annuity)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퇴직연금 제도에서 연금을 구입해야 하는 비율은 공적 연금 제도에서 제공하는 소득대체율과 관련된다. 만약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은 계층이라면 퇴직연금 제도에서의 연금 급여에 대한 필요성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공적 연금에서의 소득대체율이 낮거나, 연금 지급이 불안하다면 퇴직연금 제도에서의 연금비율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퇴직 자산이 1억 원일 경우 일정 금액(예: 5천만 원)이나 일정 비중(예: 30%)에 대해서는 최저 연금화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일시금이나 프로그램 인출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 연금화에 소요되는 금액을 5천만 원으로 가정하면, 55세 시점에서 연금을 가입할 경우 월간 약 3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연금 수

령 연령을 늦추어 5년 정도 퇴직계좌에 예치한 후 60세 정도부터 연금을 구입하게 되면 월 수령액이 40만 원 정도가 되고, 연금 지급 시기를 10년 정도 연기시킬 경우에는 약 60만 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최저 연금 유형은 물가 연동 연금, 정액 연금, 변액 연금, 표준하체 연금 등 각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달리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물가연동 연금의 장점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 가능하다는 것이며, 변액 연금은 높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자산 및 리스크에 대한 선호, 재무지식 등에 따라 정액 연금보다 퇴직자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혼자의 경우 연생 연금을 선택함으로써 초고령 계층 특히 이혼 또는 사별한 여자의 빈곤을 방지 하도록 한다. 최저 연금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생사에 관계 없이 지급기간이 확정된 연금을 지급하는 옵션을 부여함으로써 조기 사망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연금수령액 합계가 퇴직 자산 규모에 미달할 경우 양자 간 차액을 사망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적립금 보증 연금(cash refund annuity)을 제공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이와 같이 최저 수준으로 연금 구입을 의무화할 경우 퇴직연금 제도에 속한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연금을 구입하기 때문에 역선택 문제가 상당 부분 감소될 것이다. 연금 가입자들의 기대여명이 국민 전체의 기대여명보다 높을 것이지만, 동 집단에는 평균적인 기대여명보다 오래 살거나 짧게 사는 사람 또는 평균 수준으로 생존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혼재되어 역선택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연금 상품과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예: 영국의 표준하체 연금)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다.

최저 수준을 의무 연금으로 할 경우 상속욕구, 예비적 저축, 공적 연금과의 소득대체율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 계층은 과잉 연금(overannuitization)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계층에 대해서는 의무 연금의 예외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우선 퇴직 자산 규모가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연금 급여액이 지나치게 작고 연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아서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의무 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퇴직 자산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기대여명이 높아 오히려 역진적 소득재분배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입이나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망률과 보유 자산간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부의 재분배 현상이 발견되었다. 미국의 Health and Retirement Study 결과 고령 가구에서는 부와 사망률 간 負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위 25%의 사망률이 상위 25% 사망률보다 약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⁷⁾. 따라서, 의무 연금화는 저소득 계층으로부터 고소득 계층으로 의도하지 않은 부의 재분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³⁸⁾. 셋째, 퇴직 시점에서 기대여명이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다. 치명적 질병 상태여서 기대여명이 12개월 미만인 사람들에게는 적용을 제외하며, 암 발생, 주택에 대한 강제 집행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잔여 연금 지급액 현가의 일부(예: 20%)를 일시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의무 연금화는 개인들의 선호와 특수한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저 수준의 연금을 의무화할 경우 연금 구입의 시기가 중요한데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일시에 연금으로 전환하지 말고 일정기간(5년, 10년, 15년 등)에 걸쳐 분산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도 연금 구입의 시점을 분산(annuitizing in layers)시켜 유연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퇴직 자산 £250,000의 30%인 £75,000를 75세까지 연금화할 경우, 70세, 72세 및 74세에 각각 £25,000씩 연금을 구입할 수 있다. 연금 구입 기간을 분산함으로써 금융 시장 변동성에 대한 시점 리스크도 분산시키고, 필요 자금을 대한 유연성도 충족시킬 수 있다.

37) www.worldbank.org/pension

38) 이러한 현상은 연금 지급의 보증 기간 부여, 상속 옵션, 연생 연금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연금 상품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소 가능할 것이다.

<표 VI-1> 최저 연금의무화 + 일시금(또는 프로그램 인출) 방식의 혼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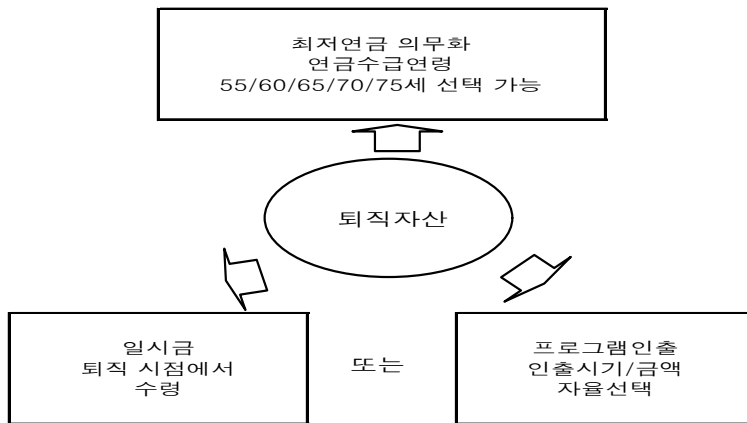
최저 연금 의무화	일시금(프로그램 인출)
개인의 선택 범위 축소	개인의 선택 극대화
종신까지 소득의 안전성 확보, 기대여명이 짧을 경우 불리	고령 인구의 자산 관리 리스크 증가
정부의 사회보장 부담 감소	정부의 사회보장 부담 증가
연금 수급자 사망 시 유족을 위한 옵션 제 공 가능	축적된 자산을 상속시킬 기회 존재
관리 비용 적을 수 있음	관리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음

연금은 단체 연금(group annuity) 형태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퇴직연금 제도에서 DB형이나 DC형 모두 연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퇴직자들이 먼저 계좌에서 자산을 인출한 후 개별적으로 개인 연금 상품을 구입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불완전 판매(mis-selling) 현상도 우려된다. 따라서, 정보 비용과 보험회사와의 잠재적인 협상력 측면에서 장점이 존재하는 단체 연금 형태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체 연금으로 구입할 경우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를 위해 보험료를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절감되어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Palacios and Rofman(2001)은 개별적으로 연금을 구입하는 남미 4개국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급 단계에서 시장의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Mitchell and Utkus(2004)도 미국 DC형 제도의 기본(default) 지급 방식을 퇴직 자산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2/3 정도를 단체 연금으로 구입하도록 제안하였다. 퇴직 자산의 일부에 대해 의무적으로 연금화하도록 정부가 규제하는 방식은 영국을 포함한 서유럽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영국에서는 DC형 제도에 대해서도 일시금을 엄격히 제한(퇴직 자산의 25% 한도)하고, 75세에 도달하기 전까지 연금화하도록 요구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Riester” 제도라 불리는 개인 퇴직 계좌(IPA: individual pension accounts)에 대해서는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20%만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종신 연금, 뮤추얼 펀드, 프로그램 인출과 같은 소득 흐름 방식으로 인출하도록 한다. 프로그

램 인출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도 85세 시점에서는 반드시 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들 국가의 경우 일시금 허용 비중이 20~25%로 낮고, 의무 연금 비중이 75~80%로 높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제도 운영이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의무 연금 비중을 최소화하고 일시금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또한, “최저 연금의무화+일시금(또는 프로그램 인출)” 방안을 완화하여 일시금이 아니라 프로그램 인출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최저 연금을 의무화하지 않고 프로그램 인출 계좌의 적립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만 연금화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시금, 프로그램 인출, 연금 방식을 결합할 경우에는 각 방식별 혼합 수준(예: 일시금 및 프로그램 인출 60%, 연금 40%), 특정 상품 유형(예: 연생 연금, 기대여명 방식에 의한 프로그램 인출 등), 연금 수급 연령(예: 55세, 60세, 65세 등)에 따라 다양한 소득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VI-1> 혼합 방식(최저 연금 의무화+일시금·프로그램 인출) 지급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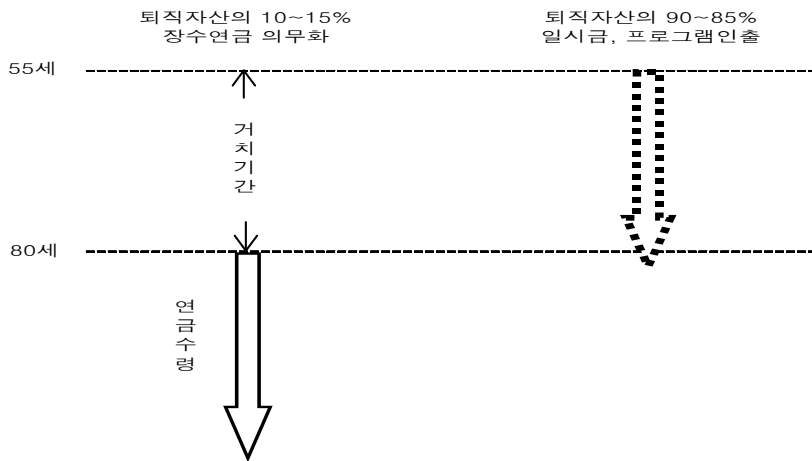
2) 2-2안: 장수 연금 의무화

장수 연금(longevity annuity)은 퇴직자의 가장 큰 리스크인 장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연금으로서 고연령에 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상품이다.

예를 들면, 다른 소득원이 소진되는 85세 시점에 연금이 개시되는 방식이다. 지급 방식으로서 장수 연금을 의무화할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서 퇴직 자산 중 일정 비중으로 특정 기간 이후에 개시되는 거치 연금(deferred annuity)을 구입해야 한다. 즉, 퇴직 자산의 10~15%를 장수 연금 구입에 사용하고, 85~90%는 프로그램 인출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해서 퇴직자 스스로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거치기간은 퇴직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연금 수급자의 평균적인 기대여명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생명표에 의하면 2006년 기준 55세 생존자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49.4%, 여자 71.6%에 달하며, 85세까지 생존할 확률도 남자 29.4%, 여자 50.9%로 높다. 여자의 경우에는 90세까지 생존할 확률도 27.2%에 달해 80세 이상 계층의 생존확률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남자는 80세, 여자는 85세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I-2> 장수 연금 의무화 방안



동 상품은 원칙적으로 해약환급금이 존재하지 않고 거치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보험” 이라고 볼 수 있다. 오직 거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하는 사람만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로 상품을 설계할 경우에는 지급 개시 후 인출, 거치 기간 중 사망 시 사망 급부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의 옵션 부여가 가능하다.

다. 3안: 지급 방식에 대한 체험 기간 부여 후 선택 유도

퇴직 시점에서 일시금과 연금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에서 연금이나 프로그램 인출에 대한 체험 기간을 부여한 후 최종 선택을 유도하도록 지급 방식의 기본 옵션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적절한 퇴직 준비를 위해 2005년 3월 “퇴직 안전 프로젝트(Retirement Security Project)”가 발족되었다. 이 기구에서는 개인과 사용자, 정책 입안자인 국회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자동 등록 제도(Automatic 401(k))이다. 자동 등록제는 근로자가 401(k) 제도에 가입하는 것을 배제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401(k)에 등록시키는 제도로서 기본 옵션을 변경시킴으로써 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사용자가 신규 근로자를 자동 등록시킨 비율이 2005년 14%, 2006년 23%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성, 소수자,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높아졌다. 대규모 제도일수록 자동 등록제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5천 명 이상 대형 제도의 자동 등록제 활용 비율은 10년 전 0%에서 2005년에는 약 34%로 높아졌다고 한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지급 단계에서도 지나친 일시금 비중을 감소시키고 연금선택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기된 아이디어 중 하나가 퇴직 시점에서 연금 상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후 나중에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퇴직자들이 연금이나 프로그램 인출 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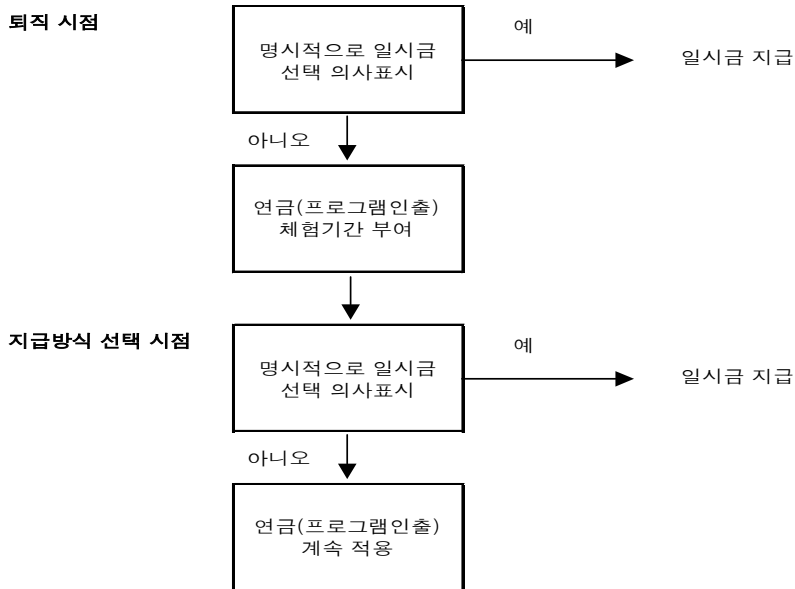
시범기간을 뚫으로써 퇴직연금의 지급 옵션에 대한 정보 부족과 편의(bias)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구체적 방식은 다음과 같다.

퇴직 시점에서 가입자들이 일시금 수령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 자산의 일정 부분을 자동적으로 2년간의 시범적인 연금·프로그램 인출 상품(two-year trial income product)에 예치하도록 한다. 즉, 퇴직자들이 퇴직 시점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퇴직연금 자산의 일정비율을 자동적으로 2년 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체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퇴직자들은 동 제도(automatic trial income plan)에서 매달 일정 금액의 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시범기간 말에 가입자들이 다른 옵션을 선택하지 않거나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소득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자발적 제도이므로 연금 구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 제외를 허용한다.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는 체험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안정적인 소득으로 수령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를 높이도록 퇴직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둘째, 퇴직 이후 소득의 안전성 측면에서 일시금 외에도 다양한 지급 옵션이 존재함을 인식하도록 한다. 셋째, 퇴직연금 제도에 잔존해서 연금 형태로 수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연금 시장에서의 역선택이 완화되기 때문에 연금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넷째, 2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에 대한 체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 종료 후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연금·프로그램 인출에 대한 선호를 제고시키고, 지급 옵션에 대해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퇴직자들이 연금을 구입하기 용이하도록 시장 기능을 조성할 수 있으며, 연금 구입자가 증가할수록 대수의 법칙이 성립하고 역선택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가격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VI-3> 지급 방식에 대한 체험 기간 부여 후 선택 방안



3. 고려 사항

이상에서 제시한 퇴직연금 제도의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들이 우리나라에
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퇴직자들이 소득 흐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
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및 하위 법규에서 지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 및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현행 근퇴법 및
관련 법령상 DB형, DC형 및 IRA 모두 퇴직연금 규약에 급여의 종류 및 수
급 요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DB형과 DC형에 대해서는 55세 이상으로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
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IRA의 경우에는 55세 이상과 연금 지급 기간 5년 이상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일시금은 55세 이상 가입자가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수령가능하다.

<표 VI-2> 지급 방식에 대한 현행 법규

제도 유형	연금 수급 요건	일시금 수급 요건	관련 법규
DB형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	일시금 수급 원함 연금 수급요건 미비	근퇴법 제12조 6
DC형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	일시금 수급 원함 연금 수급요건 미비	근퇴법 제12조 6
IRA	55세 이상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	일시금 수급 원함 55세 이상	근퇴법시행령 제23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규에서 프로그램 인출이나 연금과 같은 일시금 이외의 지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법이나 절차 등이 미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입자가 연금 수급을 원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당해 퇴직연금 제도 내에서 연금을 지급 받을 수도 있으며, 별도의 계약을 통해 연금 지급도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퇴직연금 제도 설정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 간 운용관리 계약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의 특성이 지급 방식의 차이로 귀결되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의 경우 퇴직연금 규약 및 운영(자산)관리 계약에 일시금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금으로만 지급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퇴직연금 규약에 연금과 일시금 수급 요건을 규정하고, 자산관리 계약에서 연금 전환 특약을 첨부하여 연금 지급 개시일 전일까지 연금 전환 여부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퇴직연금 사업자 중 보험회사

들만 연금 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연금 전환 구조도 퇴직자가 본인의 퇴직 자산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개인 연금 보험을 구입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 이외의 퇴직연금 사업자도 연금이나 프로그램 인출과 같은 소득 흐름 방식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표 VI-3> 퇴직연금 사업자의 지급 방식 차이

은행	증권	보험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일시금	일시금	연금(종신 연금, 확정 연금) 일시금	연금(확정 연금) 일시금

현행 법규 및 운영 형태를 볼 때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게 사용자 책무를 부과함으로써 퇴직연금 제도에서도 퇴직 시점에서 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용자 책임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다양한 지급 방식 중 일시금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법 제도 하에서는 일시금 지급이 지배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프로그램 인출이나 연금 방식을 원하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상관없이 퇴직연금 제도의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소득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금 규약에 지급 방식으로서 일시금 이외의 프로그램 인출이나 연금 방식을 제시하도록 하고, 소득 흐름 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가장 유리한 상품 공급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금 방식이나 프로그램 인출 방식에 대한 명확한 세제 혜택의 부여가 필요하다. 연금 방식으로 수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 일시금으로 간주되어 퇴직 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³⁹⁾ 따라서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시키는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해당 퇴직연금 제도에서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개인 연금 보험을 구입할 경우에는 연금 소득

39) 연금 소득과 퇴직 소득 간 세제 차이로 인해 연금 소득으로 산입될 경우에는 퇴직소득보다 실효 세율이 낮아진다.

으로 간주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명시적 해석이 필요하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연금소득의 범위를 “근퇴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퇴직연금 제도 이외의 연금지급도 소득세법에 인정된 연금 소득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자산 축적 단계에서의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급 단계에서는 퇴직자가 개별적으로 개인 연금을 구입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므로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다⁴⁰⁾. 하지만, 전 금융 상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5천만 원의 보호 한도가 너무 낮은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퇴직 자산을 활용하여 일시납 개인 연금 상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가입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예금보험 한도 5천만 원을 상향 조정(예: 1억 원, 1억 5천만 원 등)해야 한다.

넷째, 사용자 및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지급 방식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퇴직 시점에서의 기대여명, 일시금 수급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퇴직 자산을 일시금, 연금, 프로그램 인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40) 해당 퇴직연금 제도 내에서 연금 전환 특약을 선택할 경우에도 단체 책임준비금이 연금 지급을 위한 개인별 책임준비금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개인 연금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